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최미애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9월 25일
- 회부일자 : 2013년 10월 1일

3.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방향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 지원 정책 또한 규모형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위주에서 점차 사회통합에 기반한 소규모화 및 개별적 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 등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책, 예산 마련 및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노력해야 함.

나.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안 제6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 상담, 교육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안 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8조)

-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함.

바.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안 제9조)

-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함.

아. 제재조치(안 제12조)

- 도지사는 센터가 예산 집행 관련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기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동기 및 경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추진 경과

-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4.15)
 - 참석인원 : 위원회 자문위원(3명) 및 소속 위원
-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5.14)
 - 참석인원 : 토론자(6명) 외 도 내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등 70여명
- 집행부 및 입법팀 의견수렴, 비용추계(~ 7.31)
- 입법예고 20일(8.13 ~ 9. 1)

나. 타지역 조례 제정 현황

- 12개 광역시·도에서 조례 제정('13. 9.30 기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다. 현재 운영실태

- 충북소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종합적 수행을 위해 도 내 7개소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 중임.

('13. 9. 30 기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라.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업무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명시된 법령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는 없음.

- 조례안 세부내용으로는 적용범위(지원 대상)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장애인 센터장 임명, 운영위원 중 장애인 위원 과반수 이상 등 강제규정을 통해 장애인

중심 운영 원칙을 공고히 함.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을 명시하여 기존 시행 중인 추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추가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보조 시범사업 278,880천원('13)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624,492천원('13)

- 그 간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최미애 의원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단체 및 충청북도 관계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충청북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